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88호 2021. 1. 27.[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제2021-21호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승인 고시 .. 2
- 제2021-24호 노인 보호구역 지정 고시 4
- 제2021-25호 도로명주소 고시 8

공 고

- 제2021-150호 거창 무릉리 고분군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 관련 공시송달 공고 10
- 제2021-172호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공고 11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 - 21호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문화·복지 공간 개선을 통한 문화활동 증가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활성화,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경상남도의 대표적 브랜드 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
3. 사업비 : 1,0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 단노을 공동급식소 신축
 - 지역역량강화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컨설팅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21. 2. ~ 2022. 12.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940-8273)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토지》 응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단노 을 공동 급식 소 신축	1	응양	한기	915		학교용 지	12,468	668	경상남도교육청		거창군 매입예 정
	2	응양	한기	923	1	학교용 지	1,734		경상남도교육청		
	3	응양	한기	923	13	학교용 지	90		경상남도교육청		
	4	응양	한기	1043	4	도로	232		경상남도교육청		
	5	응양	한기	452	3	답	38		경상남도교육청		
계							14,562	668			

거창군 고시 제2021 - 24호

노인 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7.

거창군수

1. 목 적

- 노인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지정고시 내용

- 노인 보호구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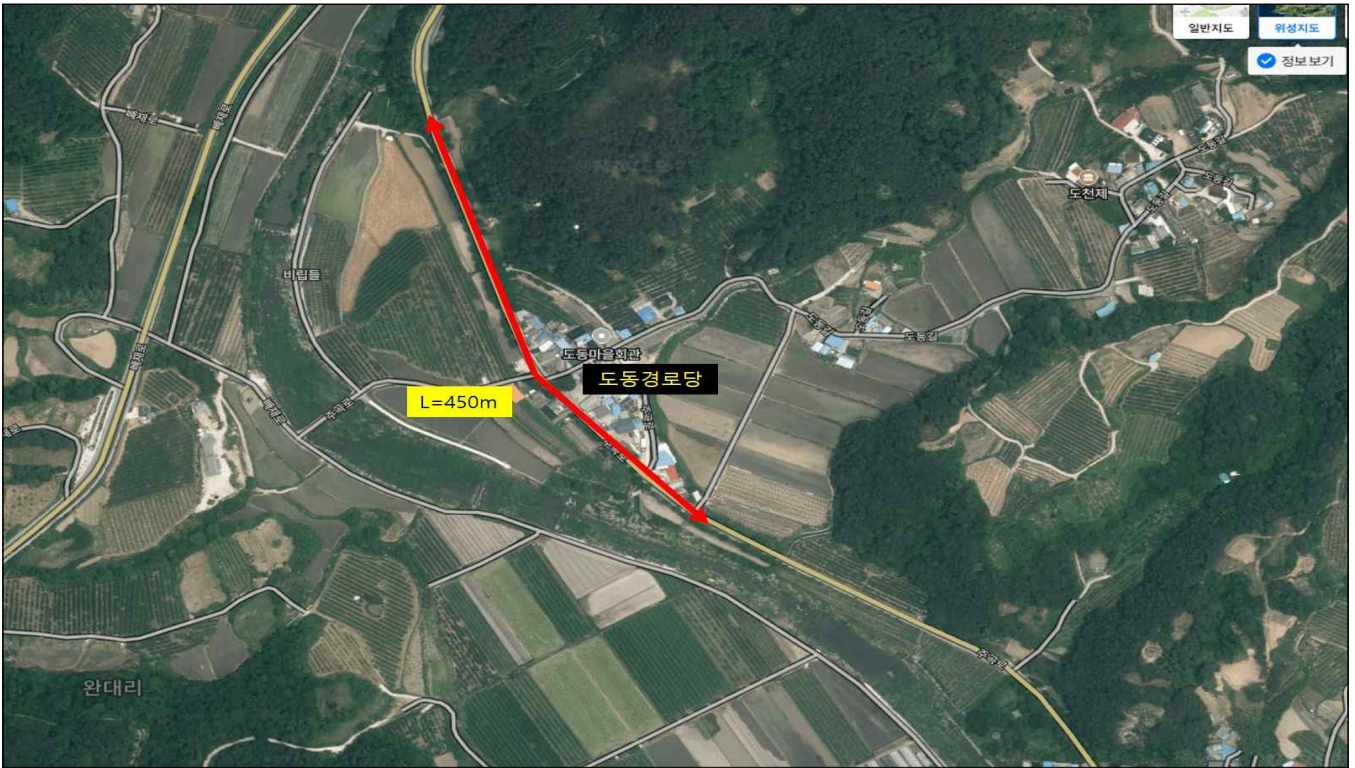
시 설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지정구간	연 장
도동경로당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동길 15	주상면 완대리 산 38 ~ 주상면 주곡로 1426	L=450m
들마경로당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276	가조면 지산로 1295-6 앞 삼거리 ~ 석강·대초마을 입구	L=380m
오산경로당	경남 거창군 웅양면 하곡2길 10	하성보건진료소 삼거리 ~ 한기·오산마을 입구	L=450m
원촌경로당	경남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43-13	웅양로 1421-1 ~ 웅양주유소 앞	L=450m
매산경로당	경남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로 972	매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 상매산마을 진입로	L=500m

※붙임 : 노인 보호구역 지정범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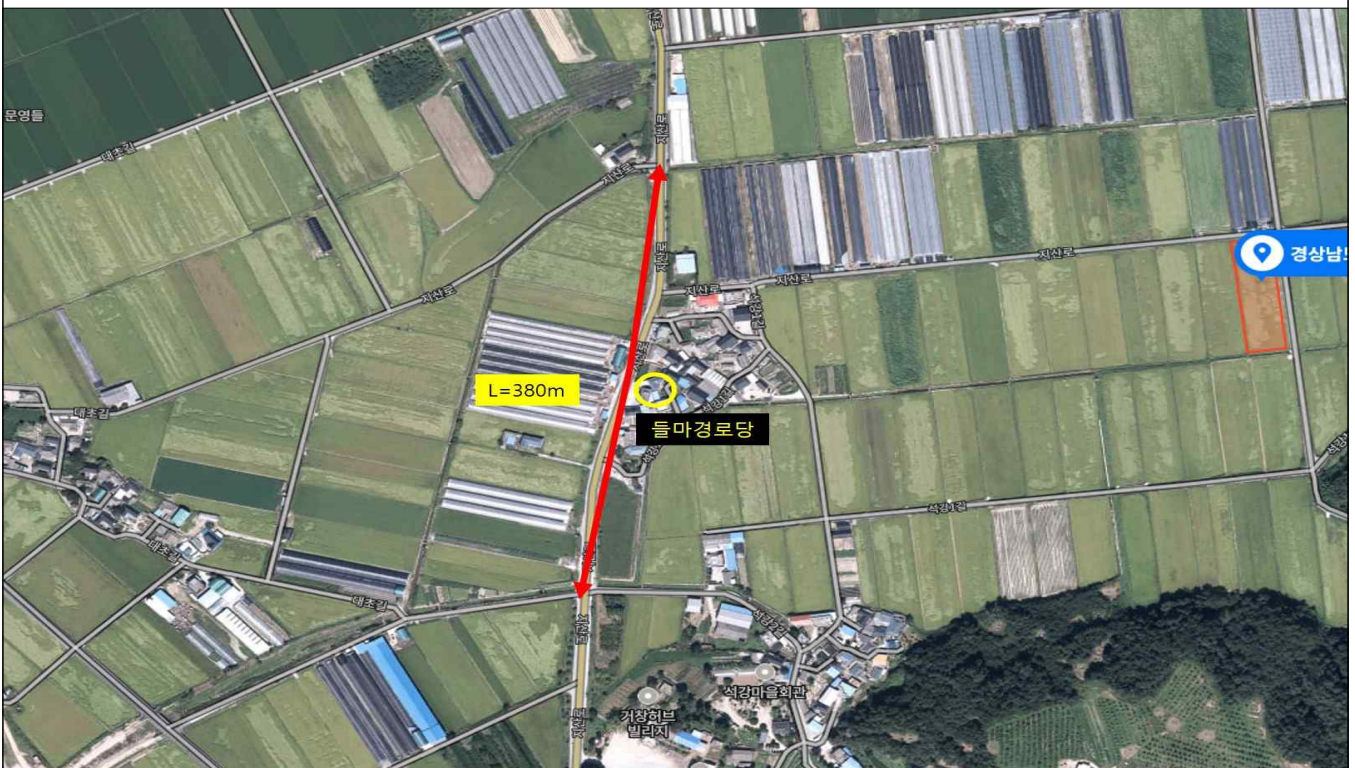
3.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82)

【붙임 1】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주상면 완대리 산 38 ~ 주상면 주곡로 1426



가조면 지산로 1295-6 앞 삼거리 ~ 석강·대초마을 입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386-45 등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699, 699-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386-45	20090401	20210127	마을 근처에 금상옥척이라는 명당자리가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82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79-265	20091228	20210127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5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들성길 15-8	20090401	20210127	들성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958-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길 13-113	20090401	20210127	산수 경치가 좋아서 이름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용양면 동호리 457	경상남도 거창군 용양면 성북1길 91-35	20090401	20210127	성 재 북쪽에 자리하게 되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414-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신기길 66-55	20090401	20210127	마을 가운데 샘물 맛이 좋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1길 103-24	20090401	20210127	마을에 칩밥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5-7, 1565-8, 1565-9, 1565-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58	20120522	20210127	승강기산업공장이 위치하는 길을 반영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1길 8	20170719	20210127	승강기전문농공단지 특성 반영	부여

거창 무릉리 고분군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 관련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거창 무릉리 고분군」의 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예고됨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25. ~ 2021. 1. 29. (5일간)
2. 내 용 : 「거창 무릉리 고분군」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송달 불능사유
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305-3	임	10,019	6,360	정보섭	폐문 부재

4. 안내사항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거창 무릉리 고분군」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동 문화재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경남도청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 경남도청 가야문화유산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전화 055-211-4575~4576 팩스 055-211-4559)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 055-940-3433, 팩스 055-940-3409)

2021년 1월 25일

거창군수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공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2. 1.(월) ~ 2021. 2. 19.(금)
- 사업량 : 3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주소 : 우)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 기타문의 : 거창군 환경과 (☎ 940-3493)

2. 지원대상

-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통학차량(신차)을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 거창군 내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서 신차 구입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과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시설은 경유차 폐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추가 신고시설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거창군으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 (차종) LPG 소형 승합(9인승 이상 ~ 15인승 이하) 자동차

3. 지원금액 : 1대당 7,000천원 정액 지원

4. 지원절차

가.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청서류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제출시 우선 선발)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우선 선정순서 : ① → ② → ③ → ④)
 - ①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② 거창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 ③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
 - ④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 선정일시 : 2021. 2. 26.(금)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통보

다. 보조금 지급 신청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2021. 3. 11.(목)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1. 4. 26.(월)까지
 - ※ 제작사 출고 지연사유 시 기간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
 - (공통)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LPG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②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주의)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사항

- 1. 지원대상자가 2021. 3. 11.(목)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 지원대상자가 2021. 4. 26.(월)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제출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5.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1. 1. 환경부)」에 따름

-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지원신청서
 -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3.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 4.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 5.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6. (별지 제6호 서식) 포기서

<작성예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법인/사업자명)	김 거 창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0				
	연락처	(휴대폰) 010-0000-0000 (전화) 055-940-0000 (이메일) gimhae@gimhae.go.kr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김거창		생년월일	1980-01-01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0			(전화번호 : 055-940-0000)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소유자	성명	김거창		생년월일	1987-01-01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0			(전화번호 : 055-330-0000)	
소유 자동차*	차명	그레이스터보	차종**	중형승합	연료	경유
	등록번호	12가3456	제작연도	2003	통학차여부 (O)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폐차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김거창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거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 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 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

성 명

(서명)

